

#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안내

## □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안내

- 현장실습생은 **근로자가 아닌 순수 현장실습생**에 해당하여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, 고용노동부고시 개정에 따라 **산재보험 적용 대상자에 해당됨**을 알려 드립니다.

## □ 가입 안내사항

- **적용대상:**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
  - ※ 현장실습생 범위: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고교 및 대학의 '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수업 등'을 이수 중인 자
- **가입방법:**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「근로자 고용신고서」 제출 (일반 근로자의 고용 신고와 동일)
- **보험료:** 훈련수당 X 업종별 보험료율 (보험료징수법 제13조)
  - ※ **무급 현장실습의 경우도 신고/ 단, 산재보험료 발생하지 않음**
- **보상범위·수준:** 근로자에 준하여 동일하게 보상 (요양·휴업급여 등)
  - ※ 훈련수당이 없거나(무급)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**최저임금에 준해서 보상**

## □ 신고·납부 의무 발생

- **신고 기간:**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'근로자 고용신고서'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
- **납부 기간:** 월별 현장실습생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